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록 (2015년도 제 6회)

1. 일 시 : 2015년 12월 10일 11시
2. 장 소 : 만경고등학교내 법인실

회의소집통보일시	2015. 12. 1
이사정수 8명	재직이사 8명

3. 참석이사 : 6명 (이사장 남궁숙
이사 최문호, 박영창, 이상우, 이주철, 박종배)

4. 불참이사 : 2명

5. 안 건 : 가. 일반 이사 선임의 건
나. 수익용재산(주식) 처분의 건
다. 정관변경의 건

회 의 전 말

간사(고행정실장) : 이사정원 8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사장 개회 선언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6회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회의록 낭독 인준

간 사 : 2015년도 제5회 이사회 안건인 2015학년도 제2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15학년도 제2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교장 명예퇴직의 건, 교장 임명의 건, 교감 임명의 건, 기간제교사 면직의 건, 기간제교사 임용의 건은 2015년 8월 27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법인이사 선임의 건

의 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본 법인 이사로 재임 중인 '박영창' 이사의 임기가 2012년 1월 31일 ~ 2016년 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20조 1항 및 만경학원 정관 제23조 1항, 제24조 2항 및 4항에 의거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의장 : 먼저 해당자인 박영창이사님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

의장 : 박영창 이사 후임으로 적합한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그 동안 박영창 이사는 원창학원 산하 원광중학교 및 원광여자중학교에 30여년을 재직하여 교육경험도 풍부한 분으로 2004년부터 본 법인 이사로 재임하시면서 법인 및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점 등 적임자로 사료되는 바, 후임으로 박영창 이사를 재선임했으면 합니다.

의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박종배 : 이상우 이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주철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이사 전원 찬동으로 2016년 1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영창' 이사 후임으로 '박영창' 이사가 재선임됨을 선포합니다.

(박영창이사 입장하여 수락 인사)

◆수익용재산(주식) 처분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5항의 7에 의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인 JB금융지주 주식(구 전북은행) 14주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각 사유는 주식 보유량이 14주로 매우 적고 계속 보유하여도 초기 주식 매입가 5,000원보다 크게 이익을 올리지 못하여 재산상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활한 법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이사회 당일 평가 금액은 1주 5,500으로 수익총액이 77,000원이나 매일 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사회에서 주식에 대한 매각이 결정되면 보유 수량 14주를 매각하여 매각일 당일 평가금액을 매각대금으로 산정하며, 재산 매각에 따라 발생되는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인 재산 매각대금은 1년 이상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적은 금액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면 이자 수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2016년 11월 만기되는 정기예탁금과 통합 재예치하기 위하여 1년 미만으로 정기예탁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 30여년을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보유량도 적고 당초 구입가보다 많고 보유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면 매각하여 예금으로 보유하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이주철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상우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인 JB금융지주 주식(구 전북은행) 14주를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법인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차액은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관 변경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5.9.15) 및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가 개정(2015.11.13.)되어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25277(2015.11.16)에 의거 만경중학교 및 만경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과 본 법인 정관 중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바, 만경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2015.11.30일자로, 만경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2012.12.7일자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2항의 일부 개정(2015.9.15)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선출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개정되어 본 법인 정관 제96조(위원의 선출 등) 제3항을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이 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로 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가 신설되어 본 법인 정관 제100조의 1(위원의 제척 등)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설을 위하여 본 법인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 및 정관 변경(안) 신·구대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법 개정이며 만경중학교 및 만경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영창 : 이상우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종배 : 동의에 재청합니다.

최문호 : 이의 없습니다.(전원찬동)

의장 : 참석이사 전원찬동으로 본 법인 정관 제96조(위원의 선출 등) 제3항의 일부 개정, 제100조의 1(위원의 제척)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문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신구대조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붙임 : 정관 신·구대조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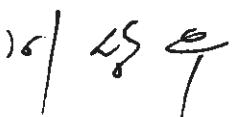
위 회의의 전말을 기록하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 이에 서명 날인함.

2015년 12월 10일 11시 40분

이사장 남궁숙(인) 

2015. 10. 10. 이사장 최문호(인)  10. 10.

이사 박영창(인) 

이사 이상우(인) 

이사 이주철(인) 

이사 박종배(인) 